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84
------------	-----

2012년 6월 25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5월 29일, 전철수·서윤기 의원 외 32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2년 5월 31일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2년 6월 2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전철수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바대로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은 주차요금 부과 시간 기준을 10분 단위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1~4분을 주차한 경우에도 10분 요금을 내야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바, 현행 10분 단위의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5분 단위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필요한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5분단위로 부과하고자 함(안 별표)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10분 단위로 부과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현재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1)<sup>1)</sup>에 따라 주차요금을 10분 단위로 부과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주차요금을 10분단위로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측면에서 일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1~2분을 주차한 경우와 8~9분을 주차한 경우에 대해 동일하게 10분 단위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주차장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

이런 점에서 현행 10분 단위 요금부과 방식을 5분 단위 요금부과로 변경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성북구, 금천구 및 구로구 등은 5분 미만의 주차시간은 주차요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구청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민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동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sup>2)</sup>.

1)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2) 노원구 3분 미만 미징수, 영등포구 2분 미만 미징수

- 다만 서울시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동의하나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97개소)<sup>3)</sup> 주차요금 수입이 일부 감소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 등이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도 일부 세입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sup>4)</sup>, 이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사항 : 서울시 공영주차장 현황(총 139개소 14,548면)

구분		개소	면수	위탁기간
계		139	15,548	-
시설관리공단		41	7,479	3년 주기 갱신
민간위탁	계	97	6,886	'10.11.1~ '13.10.31
	아마노코리아	60	3,494	
	청청실업	16	890	
	코레일네트웍스	21	2,502	
자치구위탁(관악구)		1	183	3년 주기 갱신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동 개정안의 시행일을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이후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영주차장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차요금 부과시스템 개선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3) 전체 공영주차장 139개소 중 69.8%

4) 시설관리공단 소유 주차장의 경우 5분 단위 주차요금 변경으로 인해 연간 56백만원의 세수가 감소될 수 있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울곡로·왕산로·난계로·왕십리길·퇴계로 및 의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경의선철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대흥로·용산선철도· 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 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3) 영등포지역 : 경인로·선유로·노들길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4) 영등지역 : 반포로·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 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5) 잠실지역 : 올림픽대로·석촌호수길·삼학사길·잠실길·올림픽대로·송파대로·신천동길·오금로를 잇는 도로·올림픽 대로·위례성길 및 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6) 천호지역 : 선사로·상암길·둔촌로·성내동안길· 풍납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7) 청량리지역 : 제기로·전농로·배봉로·하정로 및 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8) 용산·마포지역 : 강변북로·마포로·충정로·의주로· 한강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9) 미아지역 : 도봉로·오현길·오패산길·정릉길·삼양로·솔샘길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목동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1) 삭제 (2011.3.17)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 등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는 주차쿠폰의 요금은 시장이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8.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신설 2011.7.28)

9.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1.7.28)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구획당)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시 10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월정기권 주간	야간	1회주차시 10분당	주간	야간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월정기권 주간	야간	1회주차시 5분당	주간	야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1급지	<u>500</u>	5,000	-	-	<u>400</u>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	-	500	180,000	60,000	2급지	<u>250</u>	4,000	-	-	<u>250</u>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	-	300	100,000	40,000	3급지	<u>150</u>	3,000	-	-	<u>150</u>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	200	환승목적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4급지	<u>100</u>	2,000	50,000	-	<u>100</u>	환승목적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5급지	<u>50</u>	1,000	30,000	20,000	<u>50</u>	30,000	20,000